

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

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

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

정차장, 차량기지등 고속철도 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

및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를 면제 시켜주므로서

○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공공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의 형평성

을 기하고,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하고자 함.

62

2. 주 요 골 자

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, 차량기지 및 정비창, 궤도부설 전진기지,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와 재산 및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례제정.

3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법령

① 한국고속철도 건설 공단법 제 1조

② 지방세법 제 7 조 및 제 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자료 : 내무부장관 지방세 면제조례 (안) 준칙 사본 1부. 끝.

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

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과세면제)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

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
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, 정차장, 차량기지 및 정비창, 궤도부설
전진기지, 송전선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
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

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
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

제 3조 (면제신청)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
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
수 있다.

제 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- ③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